
1930년대 부산 赤崎灣 매축 연구

배 석 만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目 次

- | | |
|--|-------------------------------|
| I. 머리말 | V. 매축공사의 완성과 부산축항
주식회사의 설립 |
| II. 이케다의 매립 면허권 획득과 매축계획 | VI. 맺음말 |
| III. 동척의 사업 참여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 IV. 저유시설부지 (A, B구역) 매립 차질과
대동석유주식회사의 설립 | |

I. 머 리 말

본 연구는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일제말까지 이어진 赤崎灣¹⁾ 매축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듯이 부산항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출발점으로, 나아가서는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상정하여 한말부터 적극적인 항만개발이 시도 되었다. 그런데 부산항 자체가 양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 접안하고 대규모 물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해안 매립과 이를 통해 얻어진 부지에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일제시기 부산항 매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최초 북항 매축을 시작으로, 부산진, 남항, 적기만 매축으로 전개되었다.

1) 적기만은 현재의 우암동, 감만동 일대로 부산 북항의 끝단인 7~8부두가 위치한 지역을 지칭한다.

일제시기 부산항 매축과 관련해서는 지역사, 도시사의 관점에서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관심대상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²⁾ 그러나 기존연구는 주로 최초의 부산항 매축사업인 1902년 북항 매축부터 朝鮮起業株式會社가 시행한 부산진 제1기 매축이 완성된 1920년대 초반까지의 항만매축에 집중되어 있고, 1927년부터 시행한 부산진 제2기 매축을 시작으로 남항 매축과 적기만 매축으로 이어지는 1930년대 이후 일제 패망시까지 진행된 부산항 매축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못했다. 특히 일제시기 부산항 최후의 대규모 매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적기만 매축과 관련해서는 단지 매축이 이루어졌다는 결과만이 알려져 있을 뿐 매축사업의 구체적인 실체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물론 이것은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적기만 매축의 구체적 실체를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관련 자료의 입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츠쿠바분관(筑波分館)에 소장되어 있는 『閉鎖機關清算關係資料』³⁾, 그리고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묘가다니 문서(茗荷谷文書)』⁴⁾가 그것이다. 묘가

2) 金容旭, 1963, 「釜山築港誌」, 『港都釜山』 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金義煥, 1963, 1964, 1965, 「釜山開港의 研究」, 『港都釜山』 3, 4, 5, 부산시사편찬위원회; 釜山地方海運港灣廳, 1991, 『釜山港史』; 김홍관, 1999, 「일제강점기 부산의 도시개발과 그 성격-도시계획, 항만개발을 중심으로-」, 『港都釜山』 1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유교열, 2002, 「釜山 日本人專管居留地와 北浜埋築에 관하여」, 『大韓日語日文學會』 17, 대한일어일문학회; 차철욱, 2006, 「근대 부산 북항 매축과 시가지 형성」, 『韓國民族文化』 2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철욱, 2007, 「1910년대 부산진 매축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20, 부경역사연구소.

3) 『폐쇄기관청산관계자료』는 일제 패전 후 진주한 미군에 의해 폐쇄기관으로 지정되어 청산된 기관들의 관련문서이다.

4) 공식명칭은 『外務省茗荷谷研修所舊藏記錄』이다. 원래 이 문서가 도쿄 묘가다니(茗荷谷)에 위치한 일본외무성연수원에 보관되었던 것에서 이러한 명칭이 붙여졌다.

다니 문서의 적기만 관련 자료는 이미 소개된 적이 있지만⁵⁾, 자료가 소략하여 이것만으로는 적기만 매축의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폐쇄기관청산관계자료』를 통해 그 보완이 가능해졌다.

적기만 매축은 당시 조선에서 활발한 매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가 주도했다. 그는 매축을 통해 얻어진 부지를 판매하고 사업을 접는 일반적인 토목업자에 머무르지 않고 매축된 부지를 이용하여 석유사업, 임항철도 건설사업 등을 추진했다.⁶⁾ 이런 측면에서 이케다의 적기만 매축사업은 1930년대 이후 민간업자에 의한 부산항 개발의 일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적기만 매축 사업에는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깊게 간여하고 있었다. 매축사업의 구체적인 방식, 민간업자와 국책회사의 사업을 둘러싼 관계 형성과정의 일면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케다의 매립 면허권 획득과 매축계획

이케다가 적기만 매축사업에 공식적으로 뛰어들 것은 1934년 이었다. 당시 이 지역 매립권은 釜山鎮埋築株式會社—이하 ‘부산진매축’으로 줄임—가 소유하고 있었다. 매립권은 원래 아사노 소이치로(淺野總一郎)의 3인의 공동명의로 1925년 8월 12일 면허를 받았다. ‘土第248號’로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 받은 내용은

5) 묘가다니 문서의 적기만 매축 관련 자료는 노기영이 간략하게 소개한 바가 있다 (노기영, 2006, 「일제말 부산 적기만의 매립과 임항철도 건설사업」 『항도부산』 2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6) 이케다의 이력 및 기업활동 전반과 관련해서는 배석만, 「부산항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기업 활동」 『한국민족문화』 4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참조.

공장부지 및 시가지 조성 용도로 부산진 및 적기만(정식 행정지명은 동래군 서면 우암리) 일대 342,585평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을 시행하며 공사는 5년 내에 완료한다는 것이었다.⁷⁾ 부산진에 대한 매립사업은 이미 1910년대 일본 나고야(名古屋) 자본가들의 투자를 토대로 설립된 朝鮮起業株式會社에서 3차에 걸친 매축을 통해 총 40만평을 매립하는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1차 공사로 초량 앞바다에서 永嘉臺에 걸친 14만여평 공사만을 준공한 후 공사가 중단되었고, 1923년 회사도 해산하였다.⁸⁾ 그러므로 1925년 아사노 등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받은 매립권은 조선기업이 중단한 기존 부산진 매립의 잔여공사(2, 3차 공사)를 계승하는 한편으로 여기에 적기만 매립을 추가한 것이었다.

아사노 외에 매립권의 공동명목자 3인은 부산상업회의소 부회장이자 부산부협 의원이었던 이시하라 겐자부로(石原源三郎), 부산 영도에 위치했던 朝鮮船渠工業株式會社 사장 오토모 요리유키(大友頼幸), 그리고 (주)大池回漕店 사장 오이케 타다스케(大池忠助)였으나⁹⁾, 사실상 매축사업의 주도자는 아사노였다. 아사노는 일본 구재벌 중 하나인 ‘아사노재벌(淺野財閥)’의 창업자로 ‘일본 임해공업지대 개발의 아버지’, ‘메이지(明治)의 시멘트 왕’으로 불린 대자본가였다. 아사노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에 걸쳐 일본 도쿄에서 요코하마에 걸친 이른바 도쿄만(東京灣)해안지대를 매축, 항만과 공업지대로 개발하여 일본 4대 공업지대 중 하나인 케이힌공업지대(京浜工業地帶)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었다. 도쿄만 개발의 성공에 힘입어 아

7) 「要塞地帯公有水面埋立に関する件」 『大日記乙輯』 昭和10年, 일본방위성 방위연구소.

8) 1910년대 부산진 1차 매축과 관련해서는 차철욱, 2007, 「앞의 논문」, 참조.

9) 『동아일보』 1925.8.19; 『매일신보』 1926.3.13.

사노는 아마가사키(尼崎), 야즈시로(八代), 사카이(堺) 등 일본 각지는 물론 조선의 부산과 인천, 중국 상하이등에도 진출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는데, 부산진 매립사업은 그 일환이었다.¹⁰⁾ 아사노의 구상은 1910년대 조선기업이 매축한 지역부터 적기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ㄱ’자 형태로 매축하여 부두와 임항철도 등 항만 인프라를 건설하는 한편으로 수산물 가공공장, 造船所, 수리용 船渠공장 등을 유치한다는 것이었다.¹¹⁾ 즉 그가 케이힌공업지대를 건설한 15년간의 경험을 부산에 이식하여 부산진과 적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임해공업지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아사노재벌’이라는 일본거대재벌의 조선 진출사업이었던 부산진 및 적기만 매립사업은 이 후 약 2년간 표류하다가 1927년 6월 매립권이 부산진매축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¹²⁾ 매립사업이 2년간 진척 없이 공전한 이유는 부산부협이 아사노 등의 개인에게 매립면허가 부여된 것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과¹³⁾, 매립권 공동명의자들 사이에 사업과 관련하여 3개 파벌로 분리되어 대립하는 내분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¹⁴⁾ 특히 내분은 매립권

10) 『大阪朝日新聞』 1926.4.3.

11) 『매일신보』 1925.10.27.

12) 「要塞地帶公有水面埋立に関する件」,

13) 부산부협이 반발한 이유는 매립권이 부산부에 인가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사실 부산부도 276만엔의 起債 발행을 재원으로 하여 부산진 매립을 계획하고 매립권 승인을 조선총독부에 요청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조선총독부가 부산부를 제치고 아사노의 손을 들어 준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다(『동아일보』 1924.4.18, 1925.8.19). 부산부협은 조선총독부를 성토했는 한편으로 부산부원의 책임을 추궁하고, 면허권을 받은 아사노 등의 공동명의인들을 부산부의 매립청원서 도용혐의로 부산지법 검사국에 고발하는 방침까지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산부협의 반발로 인해 매립권의 공동명의권자 중 1인인 이시하라는 부산상공회의소 부회도와 평의원 및 부산부협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시대일보』 1925.8.24).

인가 직후부터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매립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공동명의권자 중 한 사람인 오이케가 사업주도자인 아사노를 도쿄까지 찾아가 만나는 등의 중재 작업을 거쳐 대립하던 3개 파벌이 합동으로 부산진매축을 설립하고 이 회사에 매립권을 양도하여 매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¹⁵⁾ 1926년 10월 코베(神戸)의 해운업자 나카무라 준삭(中村準策)을 사장으로 하는 자본금 300만엔의 부산진매축이 설립되었고, 매립권을 양도받아 1927년 10월부터 부산진 자성대 앞바다를 중심으로 한 제1구역 공사 16만평의 매립을 260만엔의 공사비 예산으로 착수하였다.¹⁶⁾

이러한 우여곡절을 가진 부산진 매립권에 대해 이케다는 1934년 부산진매축에 대가를 지불하고 매립면허지역 34만평 중 제2구역에 해당하는 적기만 지역 151,190평에 대한 매립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¹⁷⁾ 5월 17일자로 이케다와 부산진매축 사장 나카무라 간에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데 계약 내용의 주요 골자는 이케다가 적기만 매축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신에 그 대가로 매립면적 1평당 2~3엔의 대금을 매립준공인가 즉시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부산진매축이 이케다에게 매립 면허권의 일부를 팔아넘긴 것

14) 내분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3파벌의 대립구도였음은 확인된다. 사업주도자인 아사노, 매립권의 공동명의자인 조선선거공업 오토모, 그리고 코베(神戸)의 해운업자 나카무라 준삭(中村準策)이 대립하는 구도였다(『매일신보』 1925.12.4, 1926.9.19; 『동아일보』 1926.9.11). 나카무라의 사업 참여 계기는 불명이지만 또 다른 매립권 공동명의자인 오이케나 이시하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5) 『매일신보』 1925.12.4, 1926.9.19.

16) 『매일신보』 1926.10.29, 1931.5.8.

17) 「契約書(1934.5.17)」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일본국립공문서관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82100).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 성사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부산진매축이 부산진에서 적기만에 이르는 예정된 매축 공사 전부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1925년 조선총독부가 인가한 매립권에는 공사기간을 착공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1931년 5월 현재로 1927년 10월 착공된 부산진의 1구역 16만평의 공사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적기만의 제2구역 공사는 착공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가장 큰 원인은 1920년대 후반이후 금융공황에서 대공황까지 이어진 장기불황 때문이었다.¹⁸⁾

부산진매축과 이케다 간의 매립권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매립지역은 총 94,311평으로, 이를 'A~F'의 6개 구역으로 나누고 E구역 13,625평은 1평당 3엔, 나머지 5개 구역 80,686평은 1평당 2엔을 지불하며, 지불 시기는 모든 구역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아닌 각 구역별로 완공되어 준공인가가 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지불하도록 하였다. 실제 매립 총면적 94,311평은 매립면허권 상의 151,190평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면허권을 취득했던 1925년의 시점과 비교하여 이후 부산항만의 시설 계획상에 개폐·수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매축공사는 1937년 12월말까지 필히 완료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었다. 실제 매축공사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34년 4월 22일 이미 착수되어 있었다. 매축지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매립자인 이케다가 면허권 사용대금을 부산진매축에 지불하는 즉시로 일체의 소유권을 이케다 내지 그가 지명한 인물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완료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산진과 적기 매립지역 사이를 가로지르는 동천에 연락교를 건설하는 일명 '동천교 가교공사'는 이

18) 『매일신보』 1931.5.8.

케다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¹⁹⁾

그런데 매축권 계약이 성사된 지 3달 정도 지난 8월 25일 부산진매축 사장 나카무라의 사업 기반이 있는 코베(神戸)에서 수정 계약이 이루어졌다. 기존 계약과 달라진 주요 내용은 기존 계약서 제1항의 내용 중 면허권 행사 관련 권한 전부를 '위임한다'는 문구를 '양도한다'로 변경한 것과, 매립 구역을 기존 6개 구역에서 7개 구역(A~G)으로 나눈 것이었다.

우선 '위임'의 문구를 '양도'로 바꾼 것은 이케다가 부산진매축과 함께 공동 매립면허권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계약서에는 '필요할 경우' 이케다의 요구에 의해 부산진매축이 조선총독부의 승인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 면허권 명의를 가입시키는 것이었으나, 수정 계약서에서는 부산진매축이 계약 성립과 함께 바로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거쳐 이케다를 공동 면허권자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적기만 매축사업이 부산진매축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이케다가 사업과 관련한 권한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어 독자적으로 매축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다음으로 매립지를 6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재분할 한 것은 기존 E구역 13,625평을 E(E'포함) 구역 8,675평과 F구역 12,126평으로 분할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립면적도 7,176평이 늘어서, 총 매립면적은 기존 94,311평에서 101,487평이 되었다. 추가된 매립면적(F구역에 포함)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면허권 사용대금을 면제받았다. 면허권 사용대금과 관련해서는 지불방법과 관련된 문구도 추가되어 분할 지불 또는 적당한 지불 방법을 양자가 협의하도록 하였다.²⁰⁾

19) 「契約書(1934.5.17)」.

20) 「契約書(1934.8.25)」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수정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케다는 부산진매축과 함께 공동 매립면허권자가 되어 적기만 매립 면허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총 7개 구역 101,487평을 독자적으로 매립하게 되었다. 수정계약서는 1934년 11월 21일자 '土第363호'로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얻었다.²¹⁾ 매립 면적은 늘었지만 수정계약에서 공사기간은 단축되어 기존 1937년 12월말 완공에서 8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케다의 적기만 매축사업의 전체 계획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적기만 매축사업 계획

(단위: 평, 엔)

구역	매립면적	유효면적*	공사비
A	42,556	33,852	245,000
B	14,676	11,077	65,000
C	13,806	10,430	75,000
D	25,407	21,889	171,000
E	5,453	3,494	36,000
E'	2,573	2,015	114,000
F	12,147	10,019	
G	7,357	5,660	56,500
합계	123,975	98,436	762,500

자료 : 「池田佐忠氏貸付金整理ニ關スル件(1935.6.5)」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 유효면적은 총 매립면적에서 도로 및 철도부지, 物揚場 부지를 제외한 면적이다.

21) 「要塞地帯公有水面埋立に關する件」.

<표 1>은 1935년 6월 시점의 매립계획 면적으로 총 123,975평이었다. 이것은 1934년 8월 부산진매축과 매립면허권 양도 관련 추가계약 당시의 매립계획면적인 101,487평과는 2만평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매립면적 차이의 원인은 면허권 양도 계약 후 실제 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구역별로 다양한 이유에 의거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때문으로 특히 A, B, D, G구역의 매립 면적이 증가한 결과였다.²²⁾ 또 E구역을 E와 E'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E구역은 이케다 직영, E'구역은 F구역과 함께 釜山土地企業合資會社와 공동으로 매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의 공사비 산정에서 E'와 F구역을 하나로 묶여 공사비가 산정되고 있는 것도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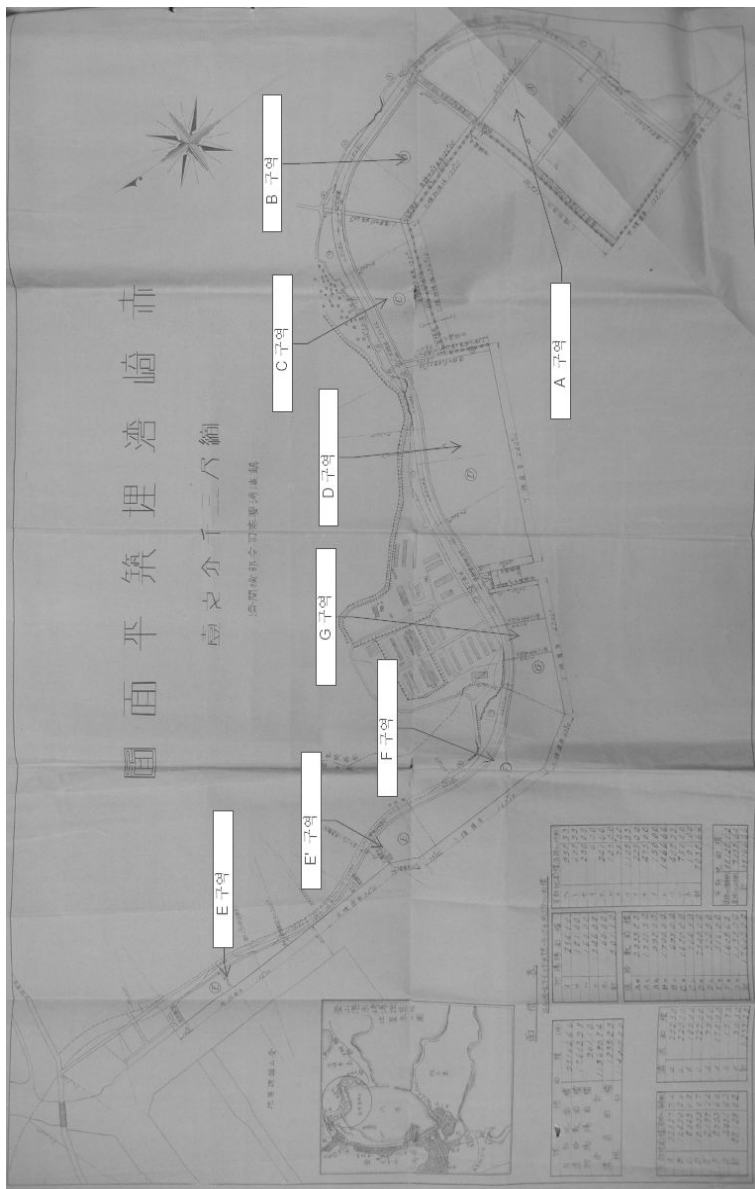
매립지 구역은 <그림 1>의 적기만 매축평면도에서 보듯이 적기반도에서 부산진 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A→B→C→D→G→F→E'→E 순으로 구획되었다. 구역별 면적은 A구역이 가장 넓었고 G구역이 가장 좁았다(<표 1> 참조). 부지 용도는 적기반도의 A와 B구역은 貯油施設과 위험물 저장소, C~G구역은 공장용지로 계획되었다.²³⁾

매립지 구역을 나눈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①지형, ②매립지 판매 전망, ③부산항만의 유지·통제적 측면을 감안한 것이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특히 부산항만의 유지·통제적 측면에서는 매립 면허권과 관련한 행정적 처리와는 별도로 관계 관청, 군부 등 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 계획한 매립 구획의 승인을 받았다.

22) 『池田佐忠氏貸付金整理 ノ件(1935.4.2)』,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23) 『池田佐忠氏貸付金整理 ノ件(1935.4.2)』.

<그림 1> 적기만 매축평면도



자료 :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忠氏貸出綴』.

사실 부산항만의 유지·통제적 측면은 이케다가 적기만 매축 사업에 뛰어든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이미 1910년대부터 시작된 부산진 매축사업이 완결을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매축부지 판매와 관련한 '경제성' 문제에 있었다. 최초로 매축사업을 주도한 조선기업주식회사가 1차 매립만을 완료한 채 회사를 해산하고 사업에서 손을 뗀 것도 매축지 구매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²⁴⁾ 1927년 조선기업에 이어서 부산진의 매축공사를 시작한 부산진매축주식회사도 앞서 언급한대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은 이케다에게 매립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케다가 부산진 매축으로부터 적기만 매립권을 양도받아 매립사업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일제가 '국방상의 관점에서' 당시 영도에 있던 스탠다드 석유회사와 라이징선 석유회사의 원유저장시설(貯油施設)을 이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도의 저유시설은 부산의 시가지 확장이 진행되면서 이 시기에 오면 어느덧 시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유사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었다. 이것이 부산항만의 유지·통제적 측면이었다.²⁵⁾ 이케다는 저유시설의

24) 차철욱, 2007, 「앞의 논문」, 참조.

25) 아울러 부산부가 같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던 새로운 '부산시가지계획'도 이케다가 적기만 매축에 뛰어들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로운 시가지계획에서도 적기 지역의 개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부산부는 지속적인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 문제를 개선하여 시가지 통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1934년 1월 8일 새로운 '부산도시계획안'을 결정했다. 이케다가 적기만 매축사업을 시작하기 3개월 전이다. 계획안의 핵심내용은 시가지 확장을 위해 부산진과 적기만을 아우르는 지역을 부산 도심에 편입하는 것이었다. 즉 부산진 방면에 부도심을 만들어 구 일본인 전관 거류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부산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김경남, 『일제하 조선에서의 도시 건설과 자본가집단망』,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3.

이설지역을 적기만 매립지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국과 교섭했고, 승인을 얻었다. 승인 과정은 적기반도가 군 요새지였던 관계로 조선총독부의 승인과 함께 육군대신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²⁶⁾ 결국 이것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적기반도에 인접한 A 및 B구역이 저유시설용 부지로 당국에 의해 지정되는 한편으로 스탠다드 및 라이징선 석유회사에는 저유시설의 이전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케다의 매축사업은 본격화되었다.²⁷⁾

영도 저유시설 이전계획과 함께 이케다가 적기만 매축사업을 추진하던 1934년초 '석유업법'이 조선에도 적용되려고 하고 있었던 점도 사업추진의 동력이 되었다. 석유업법은 석유수입 및 정제업의 정부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케다가 주목한 것은 석유업법의 내용 중 석유업자는 수입하는 1년치 원유량의 50%를 항시 보유해야만 한다는 규정이었다. 이것은 저유시설을 갖지 못한 업자가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설을 구비

136~156쪽 참조. 사실 부산의 시가지계획은 '대부산건설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920년대 중반 도청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동아일보』 1925.4.5). 부산진 방면을 공업지대로 조성하여 도심의 기능을 분담시키는 원칙은 이미 이때 수립되었다(『동아일보』 1926.4.21). 1925년 아사노가 매립권을 획득하고 부산진과 적기만의 개발에 뛰어들던 것도 이러한 부산부의 움직임에 연동한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중반에 와서야 도시계획이 가시화된 이유는 대공황 등 경제적 문제 및 계획에 의거하여 부산부에 편입될 예정지역이 편입이 되면 增稅가 예상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편입 반대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33.2.24). 1934년 부산부의 결정이후에도 실제 계획 시행은 1936년부터 다시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것 역시 같은 이유에 의한 편입지역주민의 반발 및 府會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것이었다(『동아일보』 1935.11.3).

26) 매립 대상지 중 육군 요새지대에 속한 46,650평(저유시설과 위험물 저장소가 들어설 적기반도 쪽 A, B구역)이 해당되며, 1935년 4월 16일자 「陸普第2130號」로 허가되었다(「要塞地帶公有水面埋立に關する件」).

27) 池田佐忠, 「東洋拓殖株式會社 渡邊 理事 殿(1935.11.10)」,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고, 저유시설을 소유한 업자라고 하더라도 50%의 항시 보유 규정에 의해 추가적인 원유 저장시설을 필요로 했다. 당시 부산에는 앞서 언급한 외국계 석유회사 2곳을 제외하고도 미츠비씨(三菱), 미츠이(三井), 오구라(小倉), 키시(岸) 등 15개 전후의 석유업자가 있었지만, 이들은 저유시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²⁸⁾ 더욱이 당시는 경기호황 국면의 도래와 함께 식민지 공업화가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석유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저유시설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케다의 적기만 매축사업은 유사시를 대비한 저유시설 이전 및 석유업법 시행이라는 국책에 편승하여 자본축적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저유시설 부지로 지정된 A구역의 매립면적이 가장 넓고 A, B구역의 면적이 총 매립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었다. 적기반도 쪽 해면을 매립하여 저유시설부지로 판매하는 것이 이케다 적기만 매축사업의 핵심이었다. 이케다는 적기만 매축에 필요한 공사비로 대략 76만엔 정도를 상정했고, 매축이 완료된 부지의 판매를 통해서 대략 230만엔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 230만엔의 매립지 판매대금에서 공사비 76만엔과 매립면허권 양도계약에 의해 부산진매축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24만엔을 차감하면 130만엔이라는 거액의 이익금이 예상되었다. 이 중 절반의 이익금은 A, B구역의 매축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적기만 매축공사의 보다 구체적인 수지예산서를 각 구역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8) 池田佐忠, 「東洋拓殖株式會社 渡邊 理事 殿(1935.11.10)」.

<표 2> 적기만 매축 수지예산서(단위 : 엔)

구역	공사비(①)	매립지 매각대금(②)	부산진매축 지불금(③)	이익금 {②-(①+③)}
A	245,000	796,868	85,112	466,756
B	65,000	269,795	29,353	175,442
C	75,000	241,540	27,612	138,927
D	171,000	531,265	50,814	309,451
E	36,000	76,365	16,359	24,006
E'	114,000	45,225	7,719	117,890
F		209,297	14,913	
G	56,500	137,910	14,714	66,696
합계	762,500	2,308,265	246,596	1,299,168

자료 : 「赤崎灣埋築地收支豫算書」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주 : F구역 부산진매축 지불금은 매축권 양도계약 당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로 명기한 7,176평을 제외한 금액이다.

매축공사 방식은 각 구역이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닌 매축 부지의 관료가 확정된 구역이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공사는 이케다 스스로가 토목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토목업자와 하청계약을 통해 수행하였다. 이케다와 매축공사 하청계약을 한 토목업자로 확인되는 것은 A구역 오모리구미(大森組) 산하의 이시다구미(石田組), B구역 콘도 이사무(近藤勇), 히라바야시 유조(平林右造), E, F구역 카마타 쇼타로(鎌田庄太郎) 등이다.²⁹⁾

29) 『池田佐忠氏貸付金整理ノ件(1935.4.2)』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1935년말의 관련 문서를 보면 D, F, G구역 공사는 토다구미(戸田組)가 맡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면 F구역 공사의 청부업자가 다른데, 1935년초 카마타에서 1935년말에 이르러 토다구미로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문제는 공사비 조달이었는데, 매축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매축된 부지가 판매되어 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가는 공사비는 사업추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추진자의 자금 여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자금력이 약한 사업자는 매축 부지의 판매가 부진할 경우 공사비 등 투자된 자금이 장기간 고정되어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심할 경우 파산할 수도 있었다. 오늘날의 아파트건설사업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케다는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조성예정 매축지의 판매가 성사된 이후 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부산진매축과의 매립 면허권 양도계약 당시 모든 공사를 1937년 8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명시했던 까닭에 매축사업을 마냥 지연시킬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케다의 자금 여력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12만평이 넘는 대규모 매축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케다는 1935년 상반기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만 15만 3,000엔에 달했는데, 이 중 상당 액수의 부채는 이미 상환기일을 넘겨서 연체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채의 가장 큰 부문은 적기만 매축사업 전에 시행하고 있던 부산 남항 매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생긴 부채였다.³⁰⁾ 또 이케다는 이와는 별도로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에도 29만엔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³¹⁾ 결

카마타가 재하청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東洋拓殖株式會社, 『釜山南港修築平面圖』,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 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76100). 아울러 토다구미와 관련하여 필자가 별고에서 일본의 중견 토목회사로 소개하였으나 착오였음을 밝혀둔다(배석만, 2012 「앞의 논문」 142~143쪽), 적기만 매축을 담당한 토다구미는 1932년 밀양에 戶田常吉 등이 설립한 자본금 20만엔의 ‘합자회사 戶田組’이다(「工事延期願(1936.2.29)」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30) 「池田佐忠氏貸付金整理ノ件(1935.4.2)」.

31) 이케다의 동척에 대한 부채는 대구지점 18만771엔, 경성지점 10만8,737엔,

국 매축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이케다에게는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였다.

Ⅲ. 동척의 사업 참여

이케다가 필요한 공사비 조달을 위해 손을 잡은 사업파트너는 부산토지기업합자회사와 동척이였다. 총 7개 매립구역 중 E'와 F 구역은 부산토지기업, A~D구역과 G구역은 동척의 자금투자를 받아 매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E구역은 이케다가 전액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직영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다.

매축 공사비 조달을 위해 이케다는 그가 부산 남항매축을 위해 1928년 10월 설립한 부산축항합자회사의 자기 지분과 권리를 정리했다. 부산축항은 이케다와 남항매축의 공사 청부부를 맡았던 토비시마구미(飛島組)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였다.³²⁾ 이케다는 1934년 5월 30일자 계약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토비시마구미의 사장이자 부산축항의 공동대표였던 토비시마 분키치(飛島文吉)에게 양도했다.³³⁾

목포지점 2,000엔으로 도합 29만1,508엔이였다(「池田佐忠氏貸付金整理ニ關スル件(1935.7.25)」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다른 자료에서는 169,625엔으로도 기록하고 있다(「赤崎灣埋立事業(1938.1)」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直營事業概要』, 茗荷谷文書 E40,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32) 토비시마구미는 현존하는 일본 중견 토목건설회사로, 일제시기 부산 남항 외에 마산항 매축공사도 담당했고, 그 외 카라후토(樺太; 사할린) 大泊港 매축도 실시했다. 관련해서는 배석만, 2012 「앞의 논문」 143쪽 참조.

33) 「契約書(1934.5.30)」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이케다의 부산축항합자회사 지분 정리는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中村資良編, 東亞經濟時報社)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산축항은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3년판까지 이케다와 토비시마구미의 공동출자 형태로 나오지만, 1935년판에서는 이케

E구역은 1934년 4월말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케다가 직영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였다는 것과 함께, 매축예정 부지를 구입할 대상자가 신속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E구역은 경상남도 農會가 농업창고 및 비료배급소 부지로 2,352평을, 그리고 由崎製藥所가 500평을 구매했다.³⁴⁾ 부지판매 계약을 통해 우선 받게 된 계약금과 이케다가 부산 남항 매축관련 지분을 정리하여 확보한 자금 등을 통해 E구역 매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E와 F구역의 매축을 위한 공사비 조달을 위해 손을 잡은 부산토지기업은 이케다가 부산진매축과 매립 면허권 관련 수정계약을 체결한 1934년 8월 25일에서 불과 4일이 지난 8월 29일 설립된 회사였다. 그리고 같은 날 부산토지기업은 이케다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동 회사가 이케다의 적기만 매축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급설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계기는 당시 부산에서 목재상으로 활동하던 와카사(若狹)합자회사 사장 와카사에이치(若狹榮市)와 관련이 있었다. 그가 이케다가 매축하려는 E'구역 전 부지에 제재소를 짓기 위해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와카사는 부산토지기업 자본금 5만엔 중 16,500엔을 출자했다.³⁵⁾

부산토지기업이 적기만 매축에 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은 다음

다가 빠져서 지분 정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한편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7년판에서는 이케다가 다시 사장 자리에 복귀하고 있으며, 오히려 토비시마구미의 지분이 정리되어 부산축항이 이케다 개인회사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의 구체적 내막은 알 수 없다. 다만 1935년 7월 동척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면서 공사비 조달에 숨통이 트인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4) 『池田佐忠氏貸付金整理ニ關スル件(1935.6.5)』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35) 中村資良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3년판, 東洋經濟時報社.

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이케다의 E' 및 F구역 매립에 5만엔을 투자하는 대신 이케다가 보유한 동 지역 부지판매대금 채권을 부산토지기업에 양도한다. 사실 E'와 F구역은 E구역과 함께 범 일동과 가까운 입지조건으로 인기가 있어서인지 매축사업 시작과 함께 구매자가 나타나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었다. E'구역은 언급한 것과 같이 와카사의 제제소 부지로 전 면적의 매매계약이 완료되었고, F구역 역시 전 면적이 조선와사전기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이 성립된 상황이었다. 이 판매대금의 채권을 투자금의 담보로 삼을 요량이었던 것이다. 둘째, 매축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은 우선 부산토지기업의 투자금 및 이자 상환에 쓰고, 그 결과 남는 금액은 이케다 60%, 부산토지기업 40%의 비율로 나눈다. 셋째, 와카사제제소 부지는 1934년 11월말, 그리고 조선와사전기 부지는 1935년 6월말까지 완공한다.³⁶⁾

전체적인 계약내용으로 볼 때 부산토지기업은 이케다의 매축사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이익만을 향유하려 했던 측면이 강했다. 이런 사실은 후술하는 동척과의 계약 내용과 비교하면 좀 더 확연해진다. 어쨌든 이케다는 부지매매계약을 통해 조선와사전기로부터 받은 계약금 4만1,600엔, 와카사제제소 부지 계약금 1만5,000엔, 그리고 부산토지기업의 투자금 5만엔으로 E' 및 F구역 매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³⁷⁾

한편 동척의 사업 참여는 1934년말부터 타진되었다. 동척이 처음 이케다의 매축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케다가 기존에 동척에 지고 있던 29만엔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부산지점이 이케다 소유의 남항 매축지 매입을 검토하면서 부터였다. 이 과

36) 「契約書(1934.8.29)」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37) 「赤崎埋地ニ關スル件(1935.5.20)」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정에서 이케다는 앞서 언급한 대로 A~D구역과 G구역의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동척 부산지점에 사업 참가를 제의했다. 동척은 이케다의 부채 정리를 보다 확실하게 완수하는데 사업 참여가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 매축사업에 대한 실사를 통해 동 사업이 전망이 있다는 판단 하에 참여를 결정했다. 그런데 동척이 결정한 참여 범위는 애초 이케다가 기대한 단순한 자금 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매축사업 전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동척 스스로가 적기만 매축사업의 공동경영자로 참가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1935년 7월 25일자 도쿄의 동척 본점이 승인한 사업 참가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⁸⁾

1. 부산진매축과 이케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매립 면허권에 당사(동척)도 가입한다.
2. 위의 매립 면허권에 대한 이케다의 권리, 의무는 일절 당사에 양도된다. 이에 의거하여 사업경영의 주체도 당사로 이전되며, 당사가 매립의 청부공사, 매립지의 매매계약 등 모든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또 완성 후 매립지 소유권 명의도 당사 단독 명의로 해서 제3자의 이케다에 대한 追求를 배제한다.
3. 매립공사는 매매계약 성립 후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공사대금은 당사가 지출한다. 또 부산진매축에 대한 매립면허 양도대금, 매립지 보존등기비, 사업관리비 등 모든 필요비용도 당사가 지출한다. 이에 따른 투자금액은 76만7,000엔으로 한다. 투자금액은 이케다가 동척의 요구로 제출한 대상 지역 예상매축공사비 63만엔과 필요비용(매립면허 양도대금은 부지

38) 『池田佐忠氏貸付金整理ニ關スル件(1935.7.25)』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매매 성립 후 지불하는 것임으로 제외) 6만5,000엔, 투자금에 대한 이자 7만2,000엔으로 구성된다.

4. 투자형식은 사업출자의 형식으로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위험 부담은 당사에 귀결되는 것을 의미하나 실질적 위험은 없고, 또 사업 운행 상 철저를 기하는 한편으로 제3자의 追求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5.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징수한다.
6. 본 사업의 이익금(매매 대금에서 당사의 지출금과 이자를 차감한 순이익)은 당사 60%, 이케다 40%로 배당한다. 이익배당금은 각 구역 매축지의 처분이 완료된 후에 정산하지만, 이케다에 대한 배당금은 모든 구역의 매축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당사에 유보한다. 당사에 유보된 이케다 이익배당금은 당사 정기예금, 또는 잔여 공사비로 지출(이 경우 당사 지출금과 동일하게 이자를 계산해 줌) 등을 고려하며 관련해서는 이케다와 다시 협정을 맺는다.
7. 당사 이익배당금 60% 중 20%는 매축사업적립금으로 공사 완료시까지 위험부담에 대한 대비자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0%는 이케다의 당사 대부금의 정리에 충당하도록 한다. 충당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한다.
8. 본 매립구역 중 E, E', F구역은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음으로, 당사와 이케다의 공동경영 구역은 A, B, C, D, G의 5구역으로 한다.

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동척이 매축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사업의 주도권이 사실상 동척에 넘어간 것을 의미했다. 이케다는 공동사업자의 위상을 유

지했지만 사실상 매축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 소장과 같은 위치로 전락한 것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동척의 허락을 맡아야 했다. 동척의 매립 면허권 가입은 1936년 1월 21일부로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³⁹⁾ 아울러 부산토지기업의 투자를 통해 진행하고 있던 E' 및 F구역의 경우도 이케다가 1935년 5월 부산토지기업의 투자금 5만엔 및 이익 분배금 3만엔을 동척 자금의 대출을 통해 지불하고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적기만 매축사업은 이케다와 동척의 공동경영 사업으로 압축되었다.⁴⁰⁾ E, E', F구역은 부산토지기업이 손을 땀으로서 이케다 개인직영사업이 되었지만, 여기에 필요한 총 8만엔의 정리자금을 새로운 사업파트너 동척이 대출해 줌으로써, 적기만 매축사업에 대한 동척의 영향력은 보다 확대되었다.

IV. 저유시설부지(A, B구역) 매립 차질과 대동석유주식회사의 설립

애초 이케다 개인 사업으로 시작된 적기만 매축사업은 1935년 7월을 기점으로 이케다와 동척의 공동경영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범일동에 가까운 E, E', F구역은 이케다 개인직영 사업으로, 그 외의 구역은 이케다와 동척의 공동사업의 형태였다. 매축공사는 E구역을 시작으로 B구역이 1934년 7월, E' 및 F구역이 같은 해 10월 공사에 착수했다.⁴¹⁾

39) 『池田佐忠氏貸付金整理 赤崎埋築事業ニ關スル件(1936.2.6)』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40) 『池田佐忠氏貸付金整理 赤崎埋築事業ニ關スル件(1935.6.12)』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상황이 있다. B구역 공사의 착공형태이다. E와 E', 그리고 F구역의 빠른 착공은 매립원칙이기도 한 매축부지 구입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이지만 B구역의 경우는 공사 착공시까지 부지 구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착공된 것이었다. 이 시점은 아직 동척과의 공동경영 전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매축을 시작했다. 구매자도 없는 상황이고, 자금력도 허약했던 이케다가 B구역 공사를 서둘러 시작된 데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저유시설 이전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도 저유시설 이전 및 석유업법 조선 적용에 따른 석유업자의 저유시설 구비라는 긴급 수요에 착안하여 적기만 매축사업에 뛰어든 이케다였으므로 B구역은 같이 저유시설부지로 지정된 A구역과 함께 가장 빠르게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는 했다. 그러나 부지 구매자가 없었다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영도저유시설 이전 및 석유업법 시행에 따른 수요를 생각하면 가장 확실한 판로가 존재해야 했다. 따라서 이케다의 애초 기대대로라면 부지 구매자 역시 가장 먼저 확정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B구역은 구매자 없이 공사를 시작했고, 더욱이 가장 넓은 면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기대한 A구역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석유업법이 예상보다 일찍 조선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석유업법은 1934년 6월 30일부로 조선에도 시행되었다. 예상보다 빠른 시행으로 인해 저유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부산지역 석유업자들이 이케다의 A, B구역 매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 버렸다. 아울러 조선총독부는 석유업법 시행을 계기로 조선석유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조선내 석유회사를 통합·일원화 시킬 방침이었다. 이것은 외국계 회사의 퇴거

41) 『池田佐忠氏貸付金整理ノ件(1935.4.2)』 東洋殖産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도에 저유시설을 보유한 스탠다드와 라이징선이 당국의 이설 명령에 순응하여 이케다의 적기만 매축지에 시설을 옮기는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케다가 적기만 매축사업에 뛰어든 이유이자, 가장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확신했던 A, B구역의 구매자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다가 직영이라는 무리수를 뒤편에서 A구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B구역의 매립을 구매자 없이 서둘렀던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부지를 조성하여 미처 저유시설을 갖지 못한 부산내 석유업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케다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B구역의 매축공사는 동척과의 공동경영계약이 성립된 1935년 7월 경 이미 90%의 진척을 보였고, 10월말에는 공사가 완성된 것이 확인되지만⁴²⁾, 그 이전에 석유업자들은 매축지에서 인접한 적기반도 약 3,000평의 세관보세지대에 부지를 마련하여 저유시설을 건설했다. 1935년말까지 이미 설치가 완료된 저유시설의 현황을 보면 8개 회사가 창고 형태의 저유시설 10동(총 저유량 2,970톤), 2개 회사가 탱크 형태의 저유시설 7기(총 저유량 5,000톤)였다.⁴³⁾

적기만매축사업의 핵심인 A, B구역 매축이 당초 기대와 달리 차질을 빚게 된 상황에 직면하여 이케다는 스스로가 석유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1936년 5월 대동석유주식회사의 설립이 그것이다. 1935년 11월 이케다는 동척 부산지점에 A, B구역에 자신이 경영하는 저유시설 및 정유공장을 건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구매자가 없는 A구역 매축공사에 착수할 것이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A구역 매축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미

42) 『池田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5.10.30)』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43) 『池田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6.1.16)』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완성되어 있던 B구역 부지만으로는 계획한 시설을 건설하기에 협소하다는 것을 들었다.⁴⁴⁾ 여기에 대해 동척 부산지점은 이케다의 요청과 관련하여 동척 조선지사를 경유하여 도쿄 본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부산지점이 동척 본부에 올린 승인 요청서에는 이케다의 요청을 허락하는 대신 조건이 붙었는데, 대동석유 관련 시설은 A구역 매립부지에 설치하며, 이미 완성된 B구역은 여타 동척과 공동사업지역인 C, D, G구역과 함께 판매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동척 부산지점은 이케다의 생각과 달리 A구역만으로도 이케다의 저유 및 정유시설 부지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부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추가 매축을 실시하면 된다고 판단했다.⁴⁵⁾

동척 부산지점이 당초 이케다와의 계약 당시 명기한 부지판매 계약이 이루어진 후 매축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강요하지 않고 한발 물러서서 이케다의 요구를 수용하고 본부에 승인을 요청한 것에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 사실 동척 부산지점은 이케다의 석유사업이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다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에는 우선 이케다의 석유사업이 실패하여 대동석유의 시설이 A구역에 건설되지 않을 경우 매립된 부지를 판매하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현재 부산지역 석유업자들이 석유업법에 의해 급하게 세관보세지대에 저유시설을 설치했지만 부지가 협소해서 장차 인접한 이케다 매축지 A, B구역의 사용이 확실시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만약 A구역의 부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

44) 池田佐忠, 「東洋拓殖株式會社 渡邊 理事 殿(1935.11.10)」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45) 「池田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5.12.24)」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더라도, B, C, D, G구역의 매축 부지판매 수익을 통해 A구역의 공사비 충당이 가능하여 동척의 추가 자금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었다. 이것은 당시 매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C, D, G구역의 부지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들 구역은 이 시기까지 총 8건 51만5,500엔의 부지판매계약이 성사되어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C, D, G구역의 미계약 잔여부지 및 B구역 부지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49만1,516엔의 수입이 예상되어 A구역을 제외하고도 총판매액은 100만엔을 넘어서는 계산이 나왔다. 반면 동척이 예상한 적기만 매축공사 관련 총 경비(공사비, 제경비, 부산진매축에 대한 지불금 포함)는 1935년말 현재로 94만4,226엔이었다.⁴⁶⁾

그러나 이케다의 요청과 관련하여 동척 부산지점이 조선지사를 경유하여 도쿄 본부에 요청한 승인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우선 조선지사가 제동을 걸었다. 동척 조선지사는 부산지점의 승인 요청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지사는 부산지점이 보고한 B~D구역 및 G구역의 부지매각 촉진을 조건으로 A구역의 착공을 승인한다는 의미가 명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지점은 적기만 매축부지의 매각 촉진은 본 매립지 경영의 당연한 방침으로 특별히 A구역 착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A구역의 착공여부는 A구역 자체의 처분예상 및 기타 구체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조선지사는 A, B구역의 처분 전망과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부산지점에 요구했다.⁴⁷⁾

조선지사의 요구에 대해 부산지점은 1936년 1월 추가 보고서

46) 「池田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5.12.24)」.

47) 「池田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5.12.28)」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를 제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A구역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케다가 자신의 석유사업의 전제 조건인 원유 대량수입의 이권을 이미 획득하고, 관련하여 당국의 원조 하에 가까운 시일 내에 ‘某國’에 건너가 조사·교섭할 예정임으로 이케다 석유사업 관련 시설로 A구역의 처분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둘째, B구역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관본부, 석유업자들과 교섭을 하여 세관보세지대에 가설되어 있는 저유시설을 B구역으로 이전하도록 설득 중이라는 것이었다.⁴⁸⁾

실제 이케다는 1936년 1월 멕시코로 건너가 유전개발과 관련한 현지 조사와 교섭을 하고 돌아왔다. 이케다의 석유사업 계획은 매년 멕시코로부터 최저 100만톤의 원유를 수입하여 정유업자에 공급하는 한편으로 잉여분은 대중국 무역을 통해 소비하며, 이를 위한 원유 저장시설 및 정유를 위한 시험적 설비를 적기 매축지에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사업 추진에는 전임 조선 총독들인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와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의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⁴⁹⁾ 실제 사이토와는 남항매축을 계기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부산지점의 추가 보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지사는 상당기간 이케다 요청의 처리 여부에 대한 회신을 부산지점에 내리지 않았다. 답답해진 이케다의 독촉을 받은 부산지점은 1936년 2월 다시 한 번 동일한 공문을 조선지사에 발송하여 결과의 회신을 요청하고 있다.⁵¹⁾ 이 과정은 조선지사의 고심 흔적

48) 『池田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6.1.16)』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49) 『製油場設置ニ對スル具陳書(1936.11.4)』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50) 석유사업과 관련한 이케다와 사이토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석만, 2012, 「앞의 논문」 참조.

51) 『池田佐忠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6.2.17)』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조선지사가 1936년 3월 이케다 관련 부산지사의 보고를 도쿄 본부에 올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조선지사는 이케다의 석유사업 계획은 구체성이 없고, 더욱이 현재 조선총독부가 석유사업을 조선석유주식회사로 단일화하려는 상황에서 이케다의 석유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기존 석유업자의 매립지로의 저유시설 이전 역시 조기에 기대하기 힘들며, A구역을 제외한 다른 구역의 부지판매 수입만으로도 A구역에 대한 공사 투자비를 충당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자금 고정화는 없을 것이라는 부산지점 판단 역시 용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투자안정성 확보와 동척이 적기만 매축사업에 참여한 원래 목적인 이케다의 舊債 정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애초 원칙대로 부지판매계약 성립 후 공사 착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조선지사는 현재 현실적으로 공사가 착공되지도 않은 완전히 가공의 부지에 대하여 판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여 A구역에 한해서 판매계약 없이 착공하는 것도 부지판매를 촉진시키는 한 방법으로 생각됨으로 여타 지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A구역의 공사착공을 승인해 줄 것을 본부에 요청했다. 관련하여 A구역 공사에는 1년 내외의 시일이 필요함으로 그간에 다른 구역의 판매가 상당히 진척될 것으로 기대되고, 당시의 부산 시가지 발전의 추세⁵²⁾를 보면 일정하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동척이 매축사업에 참가하면서 예상했던 이익을 올리는 것은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도 첨부하였다.⁵³⁾

52) 앞서 언급한 ‘대부산건설계획’이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3) 『池田佐忠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6.3.12)』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그러나 도쿄 동척 본사의 결정은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이케다는 1935년 5월 자신이 그간 진행해온 석유사업을 담당시킬 목적으로 대동석유주식회사⁵⁴⁾를 설립하고 A구역을 대동석유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하여 이케다는 양도 대가로 이전 적기만 매축사업에 대한 동척 참여와 관련하여 맺은 계약에서 명기한 매축사업의 순이익 중 동척지분 60%를 대동석유 주식으로 선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순이익은 A구역의 매축공사비 및 필요 경비와 부지판매대금을 예상·산정하여 결정하며, 이렇게 결정된 순이익의 60%에 해당하는 대동석유 주식을 동척에 넘기는 방식이었다.⁵⁵⁾ 이것은 투자안정성 등을 이유로 A구역 공사 착공을 승인하고 않고 있던 동척에 대한 대응으로 아예 A구역을 동척과의 공동경영구역에서 제외시켜 자신의 대동석유에 귀속시키고 독자적으로 매축을 개시하겠다는 이케다의 승부수였다.

동척의 입장에서 이케다의 제안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A구역 매축사업에서 손을 떼게 됨은 물론 덤으로 투자비 한 푼 드리지 않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만으로 수익금의 60%를 챙길 수 있는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이케다의 수정제안에 대해 동척은 1936년 7월초 승인했다.⁵⁶⁾ 앞서 1935년 11월 이케다의 최초 요청과 관련하여 반년 이상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했던 동척이 1936년 5월 중순 이케다의 수정제안에 대해서는 불과 한달 반 만에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로써 A구역 매축을 둘러싼 이케다와 동척의 실랑이는 약 9개월간의 시간을 소요한 끝에 동척이 매축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케다

54) 처음 설립당시 사명은 동아석유주식회사였으나 곧 대동석유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다. 사명 변경의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55) 「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6.5.16)」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56) 「池田佐忠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6.7.1)」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가 설립한 대동석유의 재산이 되어 독자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케다가 동척이 손을 댄 A구역 매축 공사비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보면 사실상 공사비를 동척에서 차입하여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36년 10월 이케다가 대동석유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고 있고, 이 중 5만엔은 대동석유의 운영자금으로 시급히 대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⁵⁷⁾ 1939년 4월까지 동척에 대한 대동석유의 대출금 누적액은 27만엔을 넘고 있었다.⁵⁸⁾ 앞서 보았듯이 이케다 석유사업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았던 동척의 자세를 생각하면 대동석유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동척 내부 정황은 자료의 한계로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멕시코에서 유전을 개발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이케다의 석유사업이 '석유자원 확보는 가장 긴급한 제국의 국책'이라는 명분하에 당시 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계속 추진되었던 것은 동척의 이런 태도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준다.⁵⁹⁾ 주지하듯이 동척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의미가 제국의 국책에 헌신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동척의 국책회사적 성격은 전시체제기로 접어들어 보다 강화되어 간다는 점을 상기하면 동척이 기존 입장을 접고 대동석유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 투자행동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57) 「御願(1936.10.31)」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58) 이케다는 동척에 대동석유와 관련하여 1936년 11월과 1937년 8월의 2차례에 걸쳐 각각 17만3,400엔과 10만엔, 총 27만3,400엔을 빌렸다(「東拓ノ池田佐忠外ニ對スル貸付金ニ關スル件(1939.4.21)」『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會計關係公文書綴』, 茗荷谷文書 E88,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59) 이케다의 석유사업은 군부의 거물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의 전폭적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39년 자본금 1000만엔의 국책회사 태평양석유주식회사의 설립으로 귀결되었다. 관련해서는 배석만, 2012, 「앞의 논문」 참조.

V. 매축공사의 완성과 부산축항주식회사의 설립

적기만 매축공사의 각 구역별 공사는 1934년 4월 가장 먼저 진행된 E구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말까지 B, E', F구역이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1935년에는 아직 미 착공 구역 중 A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공사가 착수되는 한편으로 1934년 공사 착수한 구역 중 F구역을 제외한 B, E, E'구역이 완공되었다. F구역은 지반침하 현상으로 2차례 공사기간이 연기되어 1936년 완공되었다.⁶⁰⁾ 그리고 1935년 착공에 들어간 C, D, G 구역 및 1936년 우여곡절 끝에 가장 늦게 착공에 들어간 A구역은 1937년 매축이 완성되어서, 1937년 8월 약 12만평의 적기만 매축이 완성되었다.⁶¹⁾ 1934년 4월말 매축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만 3년 4개월 만에 예정된 모든 구역의 매축을 완성한 것이었다. 아울러 애초 매립 면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산진매축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대로 매축이 완성된 것이기도 했다. 총 공사비는 125만엔이 들었는데, 동척이 투자금 767,000엔과 용자금 409,500엔 등 도합 1,176,500엔을 지원하여 대부분의 공사비를 조달하였다.⁶²⁾

매축된 부지에 대한 판매 역시 대동석유의 부지인 A구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매가 완료되었다.⁶³⁾ 매축 각 구역별 구매자

60) 「工事延期願(1936.2.29)」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61) 釜山築港株式會社, 1939, 「事業概要」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적기만 제1기 공사로 매립된 총 면적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다. 池田國司, 1999, 『池田佐忠 事業と人生』에는 106,376평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 5> 참조.

62) 「東拓ノ池田佐忠外ニ對スル貸付金ニ關スル件(1939.4.21)」.

63) 정확하게 언제 매축지 판매가 완료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39년 4월 21일자 동척 보고서에서 '이케다의 매축지가 A구역을 제외하고 이미 전부 판매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지구입 희망자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1938년 말 내지 1939년초까지는 판매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황을 보면 <표 3>와 같다.

<표 3> 적기 매축지 각 구역별 구매자 현황

구역	구매자	구역	구매자
A	대동석유	E	경상남도 농회(농업창고, 비료배급소) 조선 농회
B	일본화학공업 山野흑연 南鮮米油	E'	조선화학공업주식회사 中西철공소 若狹製材所
C	동양척식 小宮흑연 조선운송 동아약화학 일본화학공업	F	조선와사전기(남선합동전기) 조선질소비료
D	일본목재 조선연탄 三井물산 조선미곡창고	G	西條철공소 일본목재

자료 : 「釜山臨港鐵道建設地附近略圖」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新規株式引受關係』 1942, 茗荷谷文書 E7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및 「赤崎灣修築平面圖」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에 의거하여 작성.

(「池田佐忠氏外二名貸出ノ件(1939.4.14)」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일본국립공문서관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 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81100).

1938년 4월 이케다는 1928년 남항매축을 위해 설립한 부산축항합자회사를 개조하여 부산축항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남항매축사업 및 그간 개인 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적기만 매축사업 일절을 동 회사에 출자하여 계승시켰다.⁶⁴⁾ 자본금 500만엔으로 총 주식 10만주 중 이케다가 그간의 매축사업을 출자한 지분으로 50,986주를 소유하여 과반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였고, 사장에 취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했다.⁶⁵⁾ 500만엔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과 함께 전액 불입이 완료되었다.

부산축항 설립을 계기로 이케다와 동척의 관계는 보다 긴밀해졌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케다가 완전히 동척의 영향력 아래 놓여 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케다의 부채가 동척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이케다가 대규모 매축사업을 전개하면서 깊어진 부채는 부산축항의 설립과 함께 상당부분 동 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었지만, 남은 부채가 여전히 커서 동척에 대한 부채를 제외하고도 56만엔에 달했다. 그리고 이 중 이케다가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던 곳은 조선신탁주식회사로 22만 5,000엔이었다. 동척은 1939년 4월 이케다에게 추가로 51만엔을 대출하여 조선신탁 등 동척 이외의 제3 채권자들의 부채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동척은 추가 대출의 이유로 '대출을 통해 이케다의 부채를 정리하면 금후 當社가 이케다 사업을 원조하는 과정에서 종래와 같은 제3 채권자의 책동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여 이케다 부채를 동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이케다

64) 釜山築港株式會社, 1938, 「第壹期營業報告書」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池田國司, 1999, 『앞의 책』 52쪽.

65) 釜山築港株式會社, 「株主名簿(1939.1.21現在)」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사업에 대한 동척의 영향력 확대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⁶⁶⁾

부산축항의 설립 후 이케다의 매축사업은 보다 확대되었다. 부산 남항매축의 마지막 구간인 제4기 5만평의 매축공사, 龍堂里(현재의 수영구 용당동) 貯木製材지대조성, 영도 공업지대조성, 울산 대공업지대건설사업 등이 계획·추진되었다. 적기만 매축역시 <그림 2>에서 보듯이 적기만 매축지 A구역의 아래쪽 해면을 추가로 매립하여 2만평의 부지를 얻기 위한 2기 확장공사, 이어서 A구역과 추가 매립지 왼쪽 해면 매립을 통해 부두 용지로 32,000평을 확보하기 위한 3기 확장공사가 연이어 착공되었다.⁶⁷⁾ 물론 사업파트너는 동척이었다. 예를 들어 동척은 적기만 3기 매축공사비 100만엔 중 85만엔을 융자해 주었다.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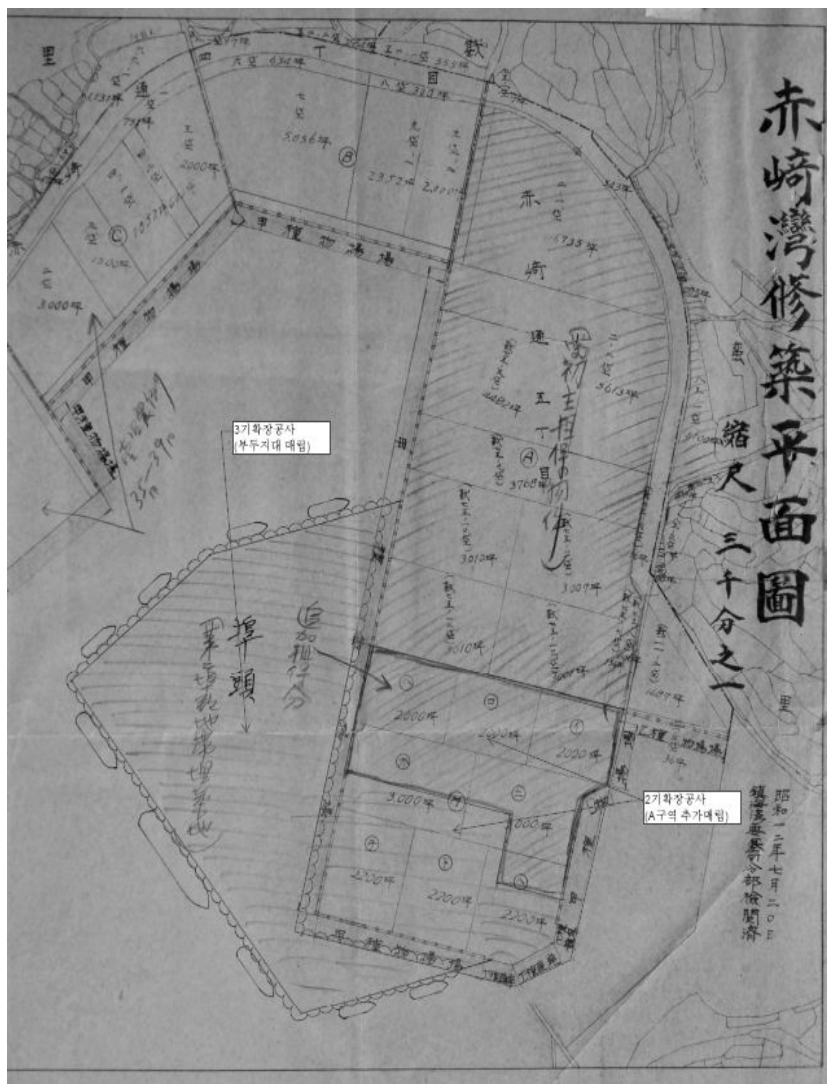
1939년 2월 출간된 부산축항의 『사업개요』를 통해 당시 추진 중이던 매축 사업들의 전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 <표 4> 및 <그림 3>과 같다.

66) 「釜山支店扱池田佐忠外二名貸出ノ件(1939.4.21)」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東拓ノ池田佐忠外ニ対スル貸付金ニ関スル件(1939.4.21)」.

67) <그림 1>과 비교하면 정확한 추가 매립지를 확인할 수 있다.

68) 釜山築港株式會社, 1939 「第參期營業報告書」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그림 2> 적기만 2, 3기 확장공사를 통한 추가매립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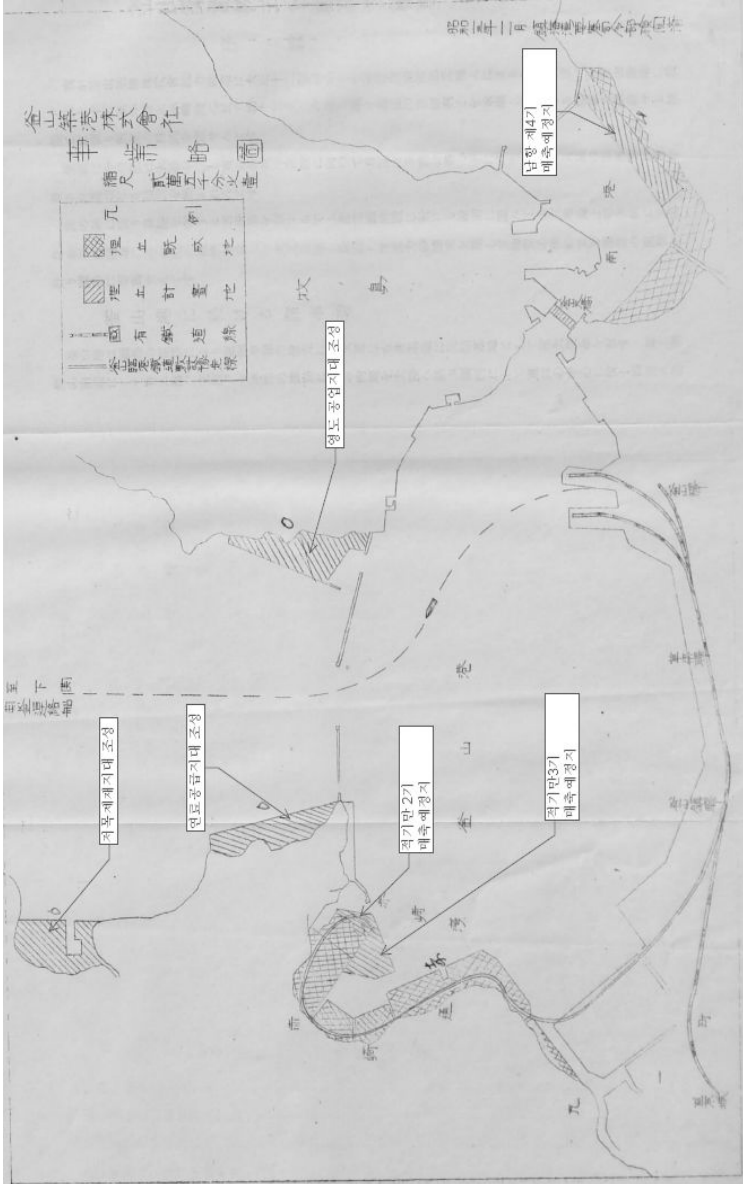
자료 :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표 4> 1939년 현재 부산축항이 추진 중인 매축사업 현황

사업명	매축면적(坪)	사업내용	비고
부산 남항 제4기 매축	총면적 : 52,200 유효면적 : 31,000	1928년 2월 조선총독으로부터 승인받은 매립대상지 중 최종 매립구역	공사 미착공
적기만 제2기 매축	총면적 : 18,500	제1기 매립지 중 A구역의 확장	공사 진행중 , 거의 완성 단계
적기만 제3기 매축	유효면적 : 32,000	A구역 앞쪽 해면을 매립하여 부두시설 조성→1만톤급 선박 접안용 안벽축조, 임항철도 연결	매립승인, 공사 미착공
적기만 수축 연료공급지대 조성	총면적 : 58,000	A구역에 들어서는 정유시설과 임항철도 부설에 연계하여 赤崎岬 부근을 매립, 부산항 입출입 선박의 연료공급	매립 승인, 공사 미착공
貯木·製材지대 조성	저목부지 : 35,200 제재공장부지 : 52,300 船溜 : 7,000	부산 內港에서 가까운 최적지 龍堂里(현재의 수영구 용당동)에 항구적인 저목장 및 제재공장 설치	매립 면허 신청 중
영도 공업지대 조성	총면적 : 68,000 방파제 : 200m 船溜 : 30,000	기존 중공업 공장부지 확장 및 연관 보조공업 부지확보	매립승인, 확장계획 면허 신청 중
울산 대공업지대 건설사업	유효면적 : 1,700,000	울산에 연간 생산량 10억엔의 대공업지대를 건설	매립 면허 신청 중

자료 : 釜山築港株式會社, 1939, 「事業概要」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에서 작성.

<그림 3> 1939년 현재 부산축항이 추진 중인 매축사업의 위치



자료 : 釜山築港株式會社, 1939, 「事業概要」.

전시통제와 물자 조달난이 심화되는 상황이었음으로 부산축항이 추진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적기만 추가매축공사는 남항 4기 매축공사와 함께 완공을 보았다.⁶⁹⁾ 적기만 제2기 공사는 총 공사비 55만엔을 들여 1937년 6월 착공, 1940년 2월 완공하였다. 1939년 7월 착공된 제3기 공사는 계획보다 대폭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애초 계획보다 2배 이상의 공사비가 들었지만 1944년 4월 1차로 26,000평이 준공되었고⁷⁰⁾, 12월 전체 구간이 완공되었다. 이로써 1934년 4월 시작된 적기만 매축공사는 10년 9개월의 기간을 통해 총 공사비 405만엔을 들여 15만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일단락되었다. 매축공사 준공의 전체적 상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적기만 매축공사의 전체적 준공상황

구 분	공사 기간	매립면적 (坪)	공사비 (만엔)	비 고
제1기 공사	1934.4~1937.5	106,376	125	매립면적은 유효면적 90,273평과 도로부지 및 공유지 16,103평으로 구성. 그 외 철도 引込予定線 2,643m, 안벽 2,845m 조성
제2기 공사	1937.6~1940.2	18,678	55	매립면허 승인은 1937년 1월
제3기 공사	1939.7~1944.12	32,000	225	매립면허 승인은 1939년 2월
합 계		157,054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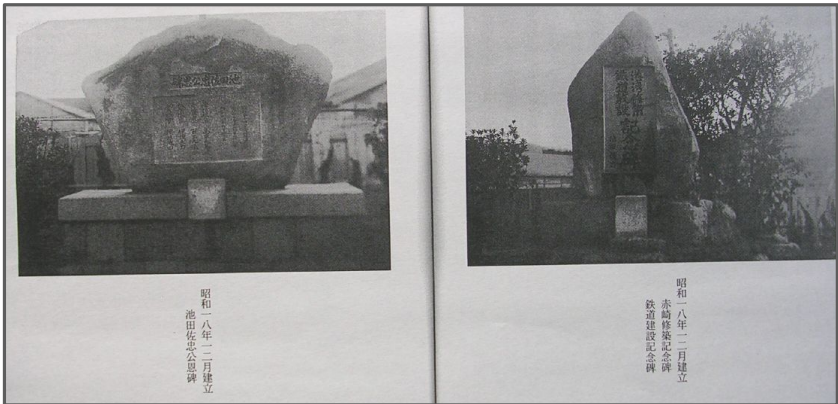
자료 : 池田國司, 1999, 『池田佐忠 事業と人生』 155~156쪽에서 작성.

69) 남항 제4기 매축공사는 1941년 5월 착공하여 1942년 5월 준공되었다. 울산 대공업지대 건설사업도 1943년 5월 제1기 매립공사가 착공되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해방을 맞았다. 관련해서는 배석만, 2012, 「앞의 논문」 141쪽 <표 3> 참조.

70) 1944년 4월 30일 釜山府 赤崎通 五町目 앞바다 26,229평이 매립준공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 1944.12.12).

그리고 매축공사 완공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이케다 공덕비와 함께 1943년 12월 세워졌다.(<그림 4> 참조) 실제 적기만 매축완공 기간 보다 1년이 앞당겨져 기념비가 세워진 이유는 부산진역에서 적기만 매립지를 가로 질러 적기역(우암역)에 이르는 임항철도⁷¹⁾가 완성된 것을 계기로 이 철도부설의 기념을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⁷²⁾

<그림 4> 적기만 매축기념비 및 이케다 공덕비



자료 : 池田國司, 1999, 『앞의 책』 166~167쪽.

주 : 오른쪽 매축 기념비 비문의 내용은 ‘港灣修築 鐵道敷設 記念碑 池田佐忠’이다. 왼쪽 공덕비의 내용은 맨 위에 가로로 ‘池田佐忠公恩碑’라고 쓰고 밑에 여러 줄의 내용을 기록했으나 판독이 어렵다.

71) 임항철도 건설은 적기만 매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된 것이었으나, 1939년 3월 부산임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72) 池田國司, 1999, 『앞의 책』 165쪽.

VI. 맺 음 말

적기만 매축사업은 1934년 이케다가 부산진매축주식회사로부터 매립 면허권을 양도받아 시행했다. 이케다가 적기만 매축사업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시국에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던 영도 저유시설의 이전 계획 및 석유업법 시행에 따른 석유업자들의 새로운 저유시설 부지의 필요성에 있었다. 이케다는 적기만을 매립하여 생성된 부지를 이들 저유시설 부지로 제공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같은 시기 본격화된 부산부의 '대부산건설편계획'도 이케다의 매축사업 추진을 자극했다.

매축 공사는 A구역에서 G구역까지 총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총 매립면적 12만평, 유효면적 10만평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중 저유시설 부지는 A 및 B구역으로 전체 매축지의 절반정도에 해당했다. 매축 공사의 착수는 매축 부지에 대한 구매자가 결정된 후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모든 구역이 동시에 착공되지 않고 구매자가 결정된 구역이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범일동 쪽에 가까운 E, E', F구역이 조선 농회, 조선와사전기 등의 구매자가 나타나 빠르게 착공되었고, 저유시설 부지이자 가장 넓은 구역인 A구역이 부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장 늦게 착공되었다. 적기만 매축사업은 1937년 8월 전 구역이 완성되었다.

매축사업의 방식은 각 구역별로 상이했는데, E구역은 이케다 직영, E'와 F구역은 부산토지기업과 공동경영, A~D, G구역은 동척과의 공동경영이었다. E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사업파트너를 영입한 것은 이케다가 독자적으로 매축사업을 진행할 만큼의 자금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동척이 사업에 참여한 것도 이케다의 동척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산토지기업

과의 공동경영은 이케다가 동척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산토지기업의 투자액 및 이익금을 상환함으로써 일찍 종결되었다. 이후 매축사업은 이케다 직영 구역과 동척과의 공동경영 구역으로 압축되었다.

적기만 매축사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저유시설 부지로 핵심 구역인 A, B구역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초 예상했던 저유시설 부지 수요가 석유업법의 예상보다 빠른 시행으로 사라지면서 공사 진행에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케다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스로 석유사업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대동석유를 설립하여 A, B구역을 그 부지로 삼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사업자 동척과의 일련의 갈등이 있었다. 양자의 갈등은 A구역을 공동경영 구역에서 제외하여 대동석유에 양도하고, 동척은 그 대가로 대동석유의 주식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10만평의 적기만 매축공사를 완료한 이케다는 곧 기존 매축구역 중 A구역을 확장하는 적기만 2, 3기 추가매축공사를 시작했다. 추가매축공사를 통해서 1944년말까지 약 5만평의 부지가 새롭게 조성되었다. 적기만 추가매축사업은 남항매축사업의 주체인 부산축항합자 회사 및 그간 이케다 개인사업으로 진행된 적기만 매축사업을 계승하여 1938년 4월 설립된 부산축항주식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케다의 부채가 동척으로 일원화되면서 양자 간의 관계는 보다 긴밀해 졌다. 동척은 이 외에도 이케다가 적기만 매축과 함께 진행한 임항철도 건설사업, 석유사업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이케다의 적기만 추가매축, 임항철도 건설, 석유사업, 울산 대공업지대건설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한 동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며 남겨진 과제이다.

【참고문헌】

- 「要塞地帶公有水面埋立に関する件」『大日記乙輯』昭和10年,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 茗荷谷文書 E34,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新規株式引受關係』, 茗荷谷文書 E7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直營事業概要』, 茗荷谷文書 E40,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會計關係公文書綴』, 茗荷谷文書 E88,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 東洋拓殖株式會社, 『釜山南港修築平面圖』, 일본국립공문서관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76100).
-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일본국립공문서관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82100).
-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일본국립공문서관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81100).
- 中村資良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洋經濟時報社.
- 池田國司, 1999, 『池田佐忠 事業と人生』.

- 『大阪朝日新聞』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총독부관보』

- 김경남, 2003, 『일제하 조선에서의 도시 건설과 자본가집단망』,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金容旭, 1963, 「釜山築港誌」『港都釜山』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 金義煥, 1963,1964,1965, 「釜山開港의 研究」『港都釜山』3,4,5, 부산시사편찬위원회.
- 김홍관, 1999, 「일제강점기 부산의 도시개발과 그 성격-도시계획, 항만개발을 중심으로-」『港都釜山』1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노기영, 2006, 「일제말 부산 적기만의 매립과 임항철도 건설사업」『항도부산』22.
- 배석만, 2012, 「부산항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기업활동」『한국민족문화』4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釜山地方海運港灣廳, 1991, 『釜山港史』.
- 유교열, 2002, 「釜山 日本人專管居留地와 北浜埋築에 관하여」『大韓日語日文學會』17, 대한일어일문학회.
- 차철욱, 2006, 「근대 부산 북항 매축과 시가지 형성」『韓國民族文化』2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차철욱, 2007, 「1910년대 부산진 매축과 그 성격」『지역과 역사』20, 부경역사연구소.

투 고	심 사	완 료
2011.10.27	2011.11.30	2011.12.15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제시기 이루어진 부산항의 대규모 매축사업 중 최후의 사업으로,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적기만 매축사업의 실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기만 매축사업은 1934년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가 釜山鎮埋築株式會社로부터 매립 면허권을 양도받아 시행했다. 이케다가 매축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당시 時局과 관련하여 부산 영도에 있었던 저유시설의 이전 및 석유업법 시행에

있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저유시설 부지가 필요했고, 이케다는 적기만을 매립하여 이 수요에 부응하려고 했던 것이다.

적기만 매축은 A구역에서 G구역까지 총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유효면적 기준 약 10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매축 방식은 각 구역별로 상이했는데, E구역은 이케다 직영, E'와 F구역은 부산토지기업주식회사와 공동경영, A~D, G구역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의 공동경영이었다. E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사업파트너를 영입한 것은 이케다가 독자적으로 매축사업을 진행할 만큼의 자금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적기만 매축사업은 1937년 8월 완성되어 총 12만평의 새로운 부지가 조성되었다. 1934년 4월말 매축공사가 시작된 이래 만 3년 4개월 만에 예정된 모든 구역의 매축을 완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케다의 적기만 매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존 A구역을 확장하는 2, 3기 매축이 진행되어 1944년말까지 추가로 약 5만평의 부지가 새롭게 조성되었다.

핵심주제어 : 적기만,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 매축, 동양척식주식회사

【Abstract】

A Study on Reclamation of Jeokgi Bay(赤崎灣)
in Busan in the 1930's

Bae, Suk Man / Korea Univ.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real state of the reclamation project in Jeokgi Bay starting in the mid-1930's, which was the final project of the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s in the Port of Bu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uketada Ikeda (池田 佐忠) took over the license right from Busanjin Reclamation Company(釜山鎮埋築株式會社), and then conducted the Jeokgi Bay reclamation project in 1934. He conducted reclamation project because of the transfer of the oil storage facility on Yeong Island (影島) in Busan and enforcement of Petroleum Act in association with the state of affairs at that time. This required a new oil storage facility site. Thus, he tried to meet the demand by reclaiming Jeokgi Bay.

Jeokgi Bay was reclaimed by dividing into a total of 7 areas between Area A and Area G, and it developed a site of 100,000 pyeong (≒330,578.12 square meters) by the standard of effective area. Each Area has a different method of reclaiming; Area E was directly managed by Suketada Ikeda, Area E' and F were jointly managed by him and Busan Land Enterprises Company (釜山土地企業會社), and Area A~D, G was jointly managed by him and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東洋拓殖株式會社).

Ikeda recruited business partners for all the areas except for Area E because he did not have enough funds to independently implement the reclamation project.

The Jeokgi Bay reclamation project was completed in August, 1937, and it developed a new site of 120,000 pyeong (\approx 396,694.215 square meters). It took three years and four months to complete reclamation of all the expected area since this reclamation construction started at the end of April, 1934. However, there is not the end of the Jeokgi Bay reclamation by Ikeda. The second and third phases of reclamation were implemented to expand the existing Area A. As a result, a new site of 50,000 pyeong (\approx 165,289.256 square meters) was additionally developed until the end of 1944.

Key Words : Jeokgi Bay, Suketada Ikeda (池田 佐忠), reclamation, Oriental Development